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을 감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 성평등가족부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6. ~ 7.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행정서기보 2명)”을 “(행정서기보 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00”을 “299”로, 일반직 계 “296”을 “295”로, 행정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

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 정원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명)은 2028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8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3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2명(<u>행정서기보 2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행정서기보 1명)</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300</u>		<u>299</u>	-1	
일	반	·	·	·	·		
직		·	·	·	·		
계			<u>296</u>		<u>295</u>	-1	
		·	·	·	·		
		·	·	·	·		
행	정	·	·	·	·		
서			<u>4</u>		<u>3</u>	-1	
기		·	·	·	·		
보		·	·	·	·		